

인천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1년 9월 26일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은 재학생의 수강이 원칙적으로 제한되나, 경기도, 경상남도, 부산, 울산의 경우 방학기간에는 수강을 허용하고 있어, 방학기간에도 수강이 금지되는 인천의 경우 학생과 학부모의 학습 선택과 학원의 운영에 있어 불리한 여건이므로, 인천에서도 방학기간에 한해서 재학생의 수강을 허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에서는 재학생이 수강할 수 없었으나, 방학기간에 한해서 재학생도 수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안 제2조의4 제1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0월 14일(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의회(참조 : 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 전화 032-440-6262, 팩스 032-440-8784, 이메일 : tico37@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 출 자	해당 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 고
○ 주 소 :			
○ 성 명 :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4. 참고자료

- 인천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인천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 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4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방학 기간은 예외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의4(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 기준) ① 영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유치원 ·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 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교습을 제한한다. <단서 신설>	제2조의4(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 기준) ① -- ----- ----- ----- ----- ----- - . 다만, 방학 기간은 예외로 한다.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관련법령 검토 및 발췌사항

관계법령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 ①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의 등록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에서 정하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에 대한 교습제한 기준을 충족할 것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 당 없 음”
관련자료	“해 당 없 음”

실·국(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인천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 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등 심의 3.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4.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5.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6.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7. 기타 문제점		
실·국(지역)별 의견			
협의개요	실·국별	제출의견	검토내용